



제422 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84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선행연구 업무수행절차	14
----------------------	----

2.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 수행절차	1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12. 13.
3. 회부연월일: 2024.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선행연구 수행시 방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수행시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u>각군 및 관계 부처</u>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 ----- ----- ----- ----- ----- ----- ----- ----- ----- ②----- ----- -----<u>각군, 관계 부처 및 방산업체</u>-----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 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행연구는 소요가 결정된 후 소요의 적절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위산업 육성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방위사업청이 최적의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을 결정하고, 예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¹⁾ 방위사업청은 선행 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업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에 위탁하고 있음.²⁾³⁾

□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반영 절차의 전제로 방위사업청 등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오고 있음.

1) 참고자료 1. 선행연구 업무수행절차 2. 선행연구 조사·분석 수행절차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선행연구 수행지침」(방위사업청훈령)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

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3) 방위사업청은 합참·소요군과 협의하여 선행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착수·중간·최종 검토위원회를 주관하며, 연구 결과물을 승인하고 있음.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대상과제수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용역기관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달리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그 의견 반영과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 성능 및 비용 등의 산출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선행연구 수행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위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제17조제2항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의견 반영 대상 기관에 현행 ‘국방과학연구소’ 외에 ‘방산업체’를 추가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으로 ‘방산업체’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개정안에서 제3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그 대상에 포함⁴⁾시켜 ‘의견 반영’과 ‘자료 제출요청’의

4)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안 제17조제3항]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근거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안⁵⁾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2024.12.9.)되어 심사중에 있으므로 위 대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u>관련 방산업체에</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u>제2항의 기관 등에</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
가.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87	강선영의원	2024. 8. 6.	2024. 11. 15.
	2203299	강대식의원	2024. 8.28.	
	2204140	강선영의원	2024. 9.20.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

- 개정안은 연구개발의 가능성 등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 및 절차 등을 국방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u>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u>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u>선행연구</u> (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 ----- -----선행연구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u>각군 및 관계 부처</u>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 ----- ----- ----- ----- ----- -----. ② ----- ----- -----<u>각군, 관계 부처 및 방산업체</u>----- -----. ③ <u>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선행연구의 항목을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선행연구 수행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2조에서는 ‘선행연구’를 법률에서의 개념 그대로 정의하고 있음.⁶⁾

□ 개정안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취지가 현행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여 적용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축소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선행연구 수행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용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는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그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제3조 정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 등⁷⁾은 개별 조문에서 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사용된

6) 「선행연구 수행지침」(방위사업청훈령)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

7) 예컨대, 정책실명제(5조), 사전개념연구(제15조의3), 선행연구(제17조), 시범사업(제17조의2), 품질경영 체제인증(제29조의2)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용어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불가피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의 용어 정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저촉되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17조에서 선행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으로 나열된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등’의 항목은 선행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실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선행연구 건수도 2023년 36건, 2024년 12건 등으로 많지 않아 국방부령에서 분석 항목을 사업별로 축소하여 운영할 실익도 크지 않음.⁸⁾

개정안과 같이 선행연구의 항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17조제4항의 국방부령 위임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선행연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8)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 수행 건수(자료: 방위사업청)

구 분	계	방위사업청 획득전략지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자체	외부용역
2024년	12	-	10	2
2023년	36	-	29	7
2022년	37	2	19	16
2021년	40	4	14	22
2020년	33	6	27	-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선행연구-----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도 현행법에서 ‘선행연구 조사분석 대상’을 명시하여 ‘선행연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데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선행연구 분석대상을 삭제하고 ‘선행연구’라는 용어만 남김으로써 선행연구의 개념과 분석대상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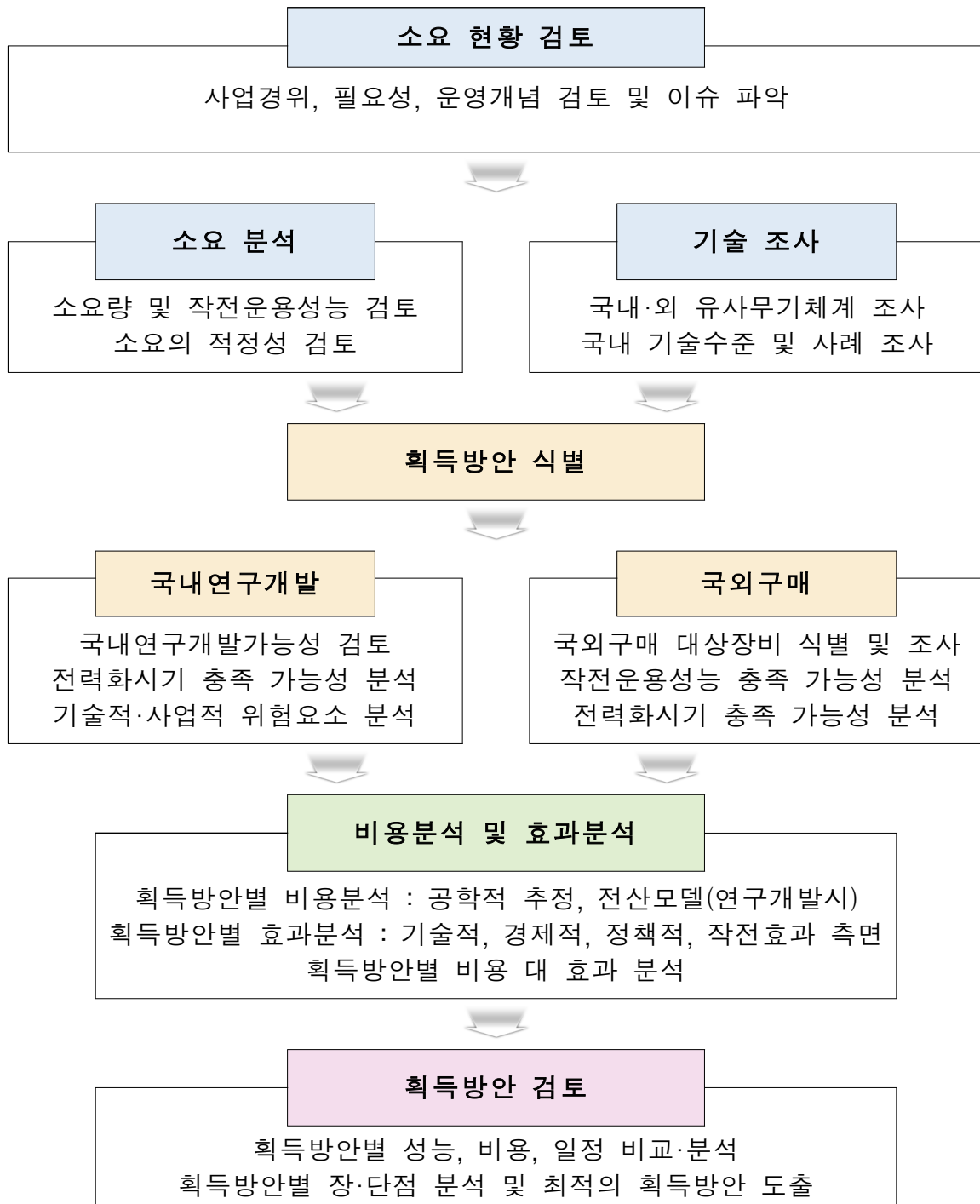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선행연구 업무수행 절차

구분	합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본부 (사업팀)	청본부 (획득전략지원과)	
업 무 수 행	· 소요검토 및 결정	· 선행연구 요구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선행연구 수행 / 관리	· 선행연구 수행 (자체/외부용역)
	소요 결정	선행연구 요구	선행연구 과제선정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선행연구계획서 작성/통보 · 검토항목 가·감 · 조사·분석 항목 / 방법 / 수행형태 등 결정	수행형태 건의
		조사·분석 검토위원회 참석 (착수/ 중간/ 최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선행연구 수행 / 단계별 진도보고 (착수/중간/ 최종) 조사·분석 검토위원회 (착수/중간/ 최종) 선행연구 보고서 작성/통보	조사·분석 수행 계획서 작성/제출 선행연구 조사·분석 수행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자료: 방위사업청

2. 선행연구 조사·분석 수행절차



*자료: 방위사업청